



2021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CONTENTS

<b>Part 01</b>	<b>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b>	1
<b>Part 02</b>	<b>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b>	5
<b>Part 03</b>	<b>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7~2021년)</b>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	17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	18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	19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20
	연도별 재학대 건수 .....	21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2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24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	25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26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27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28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29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	30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31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32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33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35
<b>Part 04</b>	<b>제언(전문가 분석)</b>	37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PART

0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 발간목적

- 본 보고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최근 5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17개 광역 시·도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 ▶ 자료수집 과정

- 본 자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 ▶ 자료분석

-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요내용

-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연도별 실적을 담고 있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신고접수 건수</li> <li>• 학대사례 판정 건수</li> <li>• 일반사례 건수</li> <li>• 재학대 건수</li> <li>• 신고자 유형</li> <li>• 학대발생장소</li> <li>• 학대 사례판정 현황</li> <li>• 학대유형 건수</li> <li>• 전체상담 횟수</li> <li>• 일반상담 횟수</li> <li>• 학대상담 횟수</li> <li>• 사후관리 횟수</li> <li>•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li> <li>•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li> <li>• 학대피해노인 연령대</li> <li>• 학대행위자 연령대</li> </ul>

PART

0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2

##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 노인학대 신고 접수

##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2021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 학대발생 장소

### ▶ 가정내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 생활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 이용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 병원 학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 공공장소 학대

-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 ▶ 사례판정

###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 일반사례

-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 노인학대 유형

### ▶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 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기타 용어정리

### ▶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 보호자

-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 노인독거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7~2021년)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7~2021년)

##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표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단위: 개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1	33	35	35	38	38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21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 증가(16,973건 → 19,391건) 하였음

표 2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사례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증감률	10.8	16.3	3.8	5.6	14.2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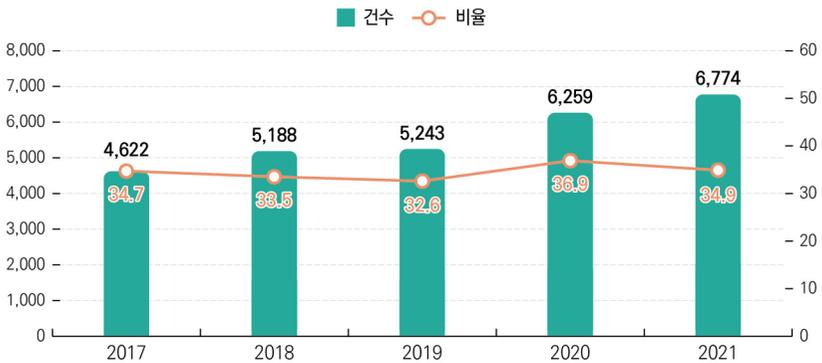
##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건수

- 학대사례<sup>1)</sup>의 경우 전체사례의 34.9%이며 2020년 대비 약 8.2% 증가 (6,259건 → 6,774건) 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대사례	4,622	5,188	5,243	6,259	6,774
	34.7	33.5	32.6	36.9	34.9
증감률	-	12.2	1.1	19.4	8.2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1)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를 말함

##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일반사례<sup>2)</sup>는 전체사례의 65.1%이며 2020년 대비 **약 17.8% 증가** (10,714건 → 12,617건) 하였음

표 4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사례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증감률	-	18.5	5.2	-1.1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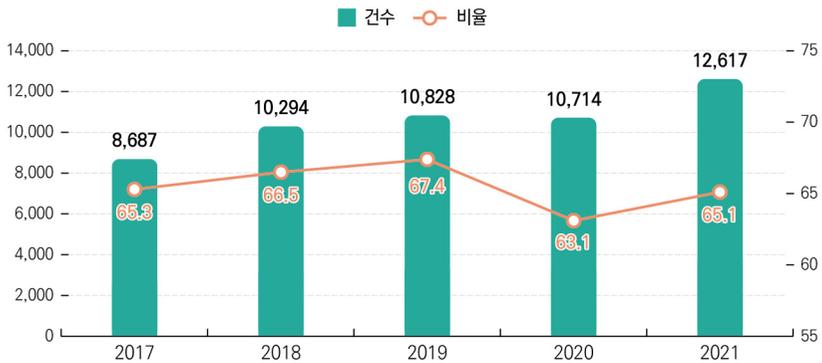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2) 일반사례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된 것을 말함

## 연도별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대비 약 20.4% 증가(614건 → 739건) 하였음

**표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대사례 건수	4,622	5,188	5,243	6,259	6,774	
재학대	건수	359	488	500	614	739
	비율	7.8	9.4	9.5	9.8	10.9
증감률	-	35.9	2.5	22.8	20.4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4% 감소 (939건 → 860건) 하였음
- 2021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87.3%이고, “관련기관”(4,799건, 70.8%)의 신고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5.3%), “친족”(549건, 8.1%), “타인”(197건, 2.9%)의 신고 비율은 2020년 대비 감소함

표 6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0	26	24	35	23
		0.4	0.5	0.5	0.6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9	12	21	20	11
		0.2	0.2	0.4	0.3	0.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53	194	225	267	246
		3.3	3.7	4.3	4.3	3.6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1	3	4	4
		0.0	0.0	0.1	0.1	0.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05	72	83	92	70
		2.3	1.4	1.6	1.5	1.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83	398	375	246	326
		6.1	7.7	7.2	3.9	4.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8	12	17	25	10
		0.4	0.2	0.3	0.4	0.1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34	29	24	116	45
		0.7	0.6	0.5	1.9	0.7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5	2	2	5	1
	0.1	0.0	0.0	0.1	0.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2	-	-	-	1	
	0.0	-	-	-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1	1	-	-	
	-	0.0	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4	5	9	5	7	
	0.1	0.1	0.2	0.1	0.1	
응급구조사	-	-	-	1	-	
	-	-	-	0.0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료기사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5	66	89	2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5	9	8	8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5	18	26	83	
	소계	635	767	877	939	860	
		13.7	14.8	16.7	15.0	12.7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431	387	358	450	361
			9.3	7.5	6.8	7.2	5.3
		학대행위자 본인	6	4	5	6	8
			0.1	0.1	0.1	0.1	0.1
친족		407	472	386	531	549	
		8.8	9.1	7.4	8.5	8.1	
타인		755	156	259	216	197	
		16.3	3.0	4.9	3.5	2.9	
관련기관 <sup>3)</sup>		2,388	3,402	3,358	4,117	4,799	
		51.7	65.6	64.0	65.8	70.8	
소계	3,987	4,421	4,366	5,320	5,914		
	86.3	85.2	83.3	85.0	87.3		
계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됨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21년 **5,962건(88.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20년 대비 2.9% 증가(521건 → 536건)하였으며,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20년 대비 5.4% 감소(92건 → 87건) 하였음

표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내	4,129	4,616	4,450	5,505	5,962
	89.3	89.0	84.9	88.0	88.0
생활시설	327	380	486	521	536
	7.1	7.3	9.3	8.3	7.9
이용시설	16	41	131	92	87
	0.3	0.8	2.5	1.5	1.3
병원	27	65	45	37	62
	0.6	1.3	0.9	0.6	0.9
공공장소	58	42	60	39	54
	1.3	0.8	1.1	0.6	0.8
기타	65	44	71	65	73
	1.4	0.8	1.4	1.0	1.1
계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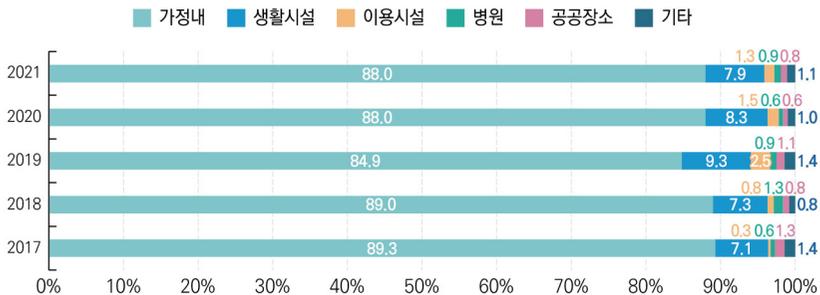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학대 사례판정 현황

-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 2.1%(142건), 비응급 사례 65.6%(4,445건), 잠재 사례 32.3%(2,187건)로 2020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응급	165	105	104	165	142
	3.6	2.0	2.0	2.6	2.1
비응급	2,803	3,221	3,322	3,923	4,445
	60.6	62.1	63.4	62.7	65.6
잠재	1,654	1,862	1,817	2,171	2,187
	35.8	35.9	34.7	34.7	32.3
계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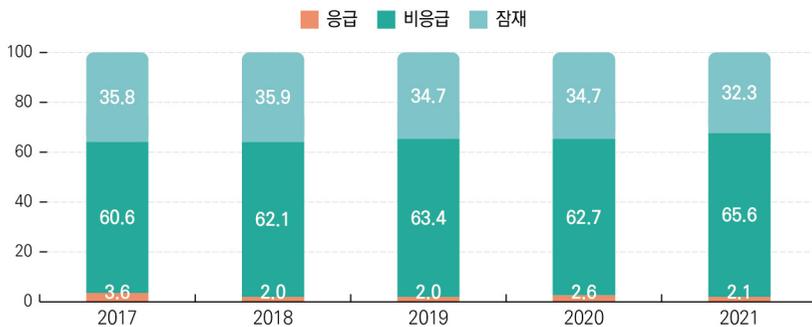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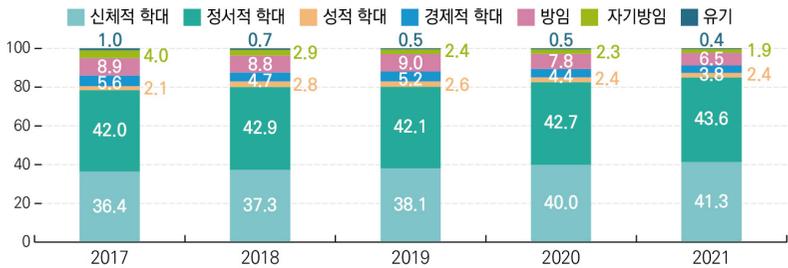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건수(21) : 정서적 학대 4,627건(43.6%), 신체적 학대 4,390건(41.3%), 방임 691건(6.5%), 경제적 학대 406건(3.8%), 성적학대 260건(2.4%), 자기방임 204건(1.9%), 유기 46건(0.4%)의 순
- 신체적 학대, 정서적, 성적 학대유형은 2020년 대비 증가
  - \* 신체적 학대 증가율: 12.1% (3,917건→4,390건)
  - \*\* 정서적 학대 증가율: 10.5% (4,188건→4,627건)
  - \*\*\* 성적 학대 증가율: 12.6% (231건→260건)

**표 9**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체적 학대	2,651	3,046	3,138	3,917	4,390
	36.4	37.3	38.1	40.0	41.3
정서적 학대	3,064	3,508	3,465	4,188	4,627
	42.0	42.9	42.1	42.7	43.6
성적 학대	150	228	218	231	260
	2.1	2.8	2.6	2.4	2.4
경제적 학대	411	381	426	431	406
	5.6	4.7	5.2	4.4	3.8
방임	649	718	741	760	691
	8.9	8.8	9.0	7.8	6.5
자기방임	291	240	200	223	204
	4.0	2.9	2.4	2.3	1.9
유기	71	55	41	53	46
	1.0	0.7	0.5	0.5	0.4
계	7,287	8,176	8,229	9,803	10,624
	100	100	100	100	100



**그림 8**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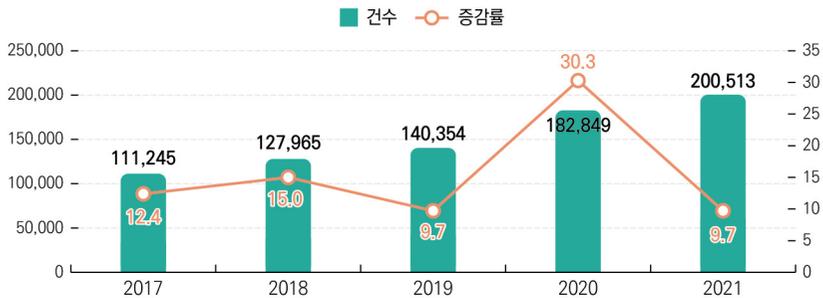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전체상담 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임
  - 전체상담 횟수는 2020년 대비 약 9.7% 증가(182,849회 → 200,513회) 하였으며, 전체 신고접수 건수(19,391건) 한 사례당 10.3회 상담을 실시 하였음

**표 10**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상담	111,245	127,965	140,354	182,849	200,513
증감률	12.4	15.0	9.7	30.3	9.7



**그림 9**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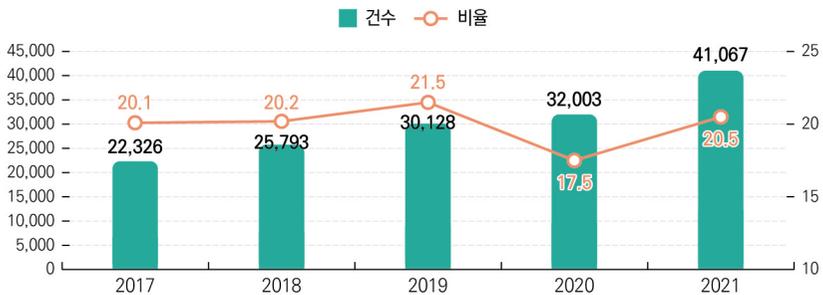
##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일반상담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8.3% 증가(32,003회 → 41,067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20.5%의 비율을 보임
  - 전체 일반사례 건수(12,617건) 한 사례당 약 3.3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1** 연 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상담	22,326	25,793	30,128	32,003	41,067
	20.1	20.2	21.5	17.5	20.5
증감률	-	15.5	16.8	6.2	28.3



**그림 10**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학대상담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5.7% 증가(150,846회 → 159,446회) 하였으며, 전체상담 횟수의 79.5%를 차지함
  - 전체 학대상례 건수(6,774건) 한 사례당 약 23.5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표 12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대상담	88,919	102,172	110,226	150,846	159,446
	79.9	79.8	78.5	82.5	79.5
증감률	-	14.9	7.9	36.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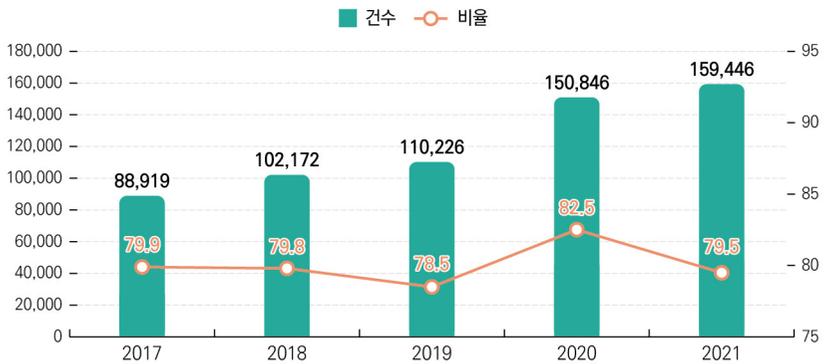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20년 대비 약 4.6% 증가(24,057회 → 25,170회) 하였음

**표 13**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후관리	11,759	13,243	18,135	24,057	25,170
증감률	-9.2	12.6	36.9	32.7	4.6



**그림 12** 연도별 사후관리 횟수 추이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2020년 대비 노인부부가구는 14.0%(2,046건 → 2,332건), 노인독거<sup>4)</sup> 가구는 11.4%(1,073건 → 1,195건)로 증가함

표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인독거	1,007	999	1,039	1,073	1,195
	21.8	19.3	19.8	17.1	17.6
노인부부	1,216	1,512	1,669	2,046	2,332
	26.3	29.1	31.8	32.7	34.4
자녀동거	1,536	1,738	1,588	2,060	2,111
	33.2	33.5	30.3	32.9	31.2
손자녀동거	178	187	182	199	217
	3.9	3.6	3.5	3.2	3.2
자녀·손자녀동거	245	252	195	253	235
	5.3	4.9	3.7	4.0	3.5
기타	440	500	570	628	684
	9.5	9.6	10.9	10.0	10.1
계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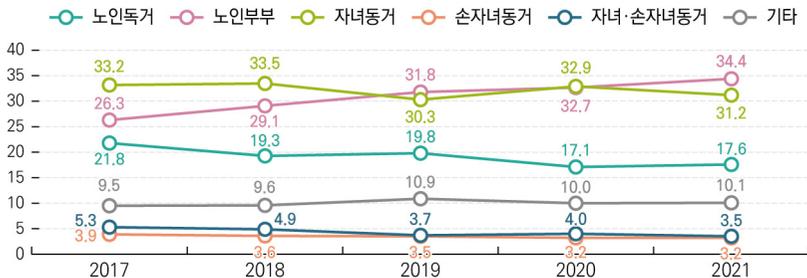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독거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배우자”(2,455건, 29.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학대행위자 유형(21년) :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딸(7.4%)
- “기관”에 의한 학대는 2020년 대비 약 148.3%로 크게 증가(874건 → 2,170건)<sup>5)</sup>

**표 1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인	290	240	200	221	204
	5.7	4.2	3.5	3.3	2.4
배우자	1,263	1,557	1,749	2,120	2,455
	24.8	27.5	30.3	31.7	29.1
아들	1,913	2,106	1,803	2,288	2,287
	37.5	37.2	31.2	34.2	27.2
며느리	131	143	109	123	119
	2.6	2.5	1.9	1.8	1.4
딸	424	436	438	589	627
	8.3	7.7	7.6	8.8	7.4
사위	27	34	27	28	42
	0.5	0.6	0.5	0.4	0.5
손자녀	124	134	112	168	172
	2.4	2.4	1.9	2.5	2.0
친척	49	59	50	64	90
	1.0	1.0	0.9	1.0	1.1
타인	176	168	222	223	257
	3.5	3.0	3.8	3.3	3.1
기관	704	788	1,067	874	2,170
	13.8	13.9	18.5	13.0	25.8
계	5,101	5,665	5,777	6,698	8,423
	100	100	100	100	100

5) 입소노인의 신체역제대 사용, 가림막 미사용 등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시설 종사자 전원을 학대행위자로 중복 입력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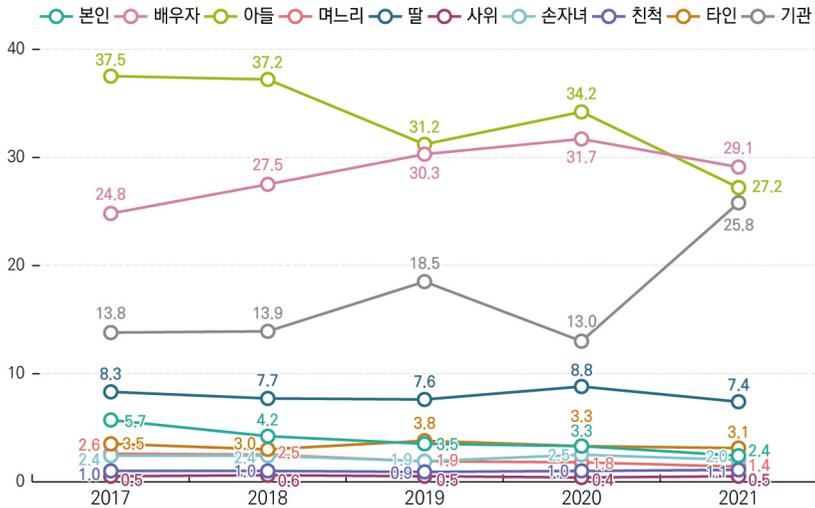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80대 30.1%, 60대 21.1%, 90대 5.9%, 100세 이상 0.1%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9세 이하	4	-	-	-	-
	0.1	-	-	-	-
60~64세	141	-	-	-	-
	3.1	-	-	-	-
65~69세	740	819	919	1,240	1,428
	16.0	15.8	17.5	19.8	21.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0~74세	969	1,193	1,189	1,385	1,505
	21.0	23.0	22.7	22.1	22.2
75~79세	1,071	1,250	1,157	1,339	1,394
	23.2	24.1	22.1	21.4	20.6
80~84세	900	1,020	1,031	1,218	1,269
	19.5	19.7	19.7	19.5	18.7
85~89세	525	588	586	690	769
	11.4	11.3	11.2	11.0	11.4
90~94세	204	245	289	283	308
	4.4	4.7	5.5	4.5	4.5
95~99세	58	61	63	92	92
	1.3	1.2	1.2	1.5	1.4
100세 이상	10	12	9	12	9
	0.2	0.2	0.2	0.2	0.1
계	4,622	5,188	5,243	6,259	6,774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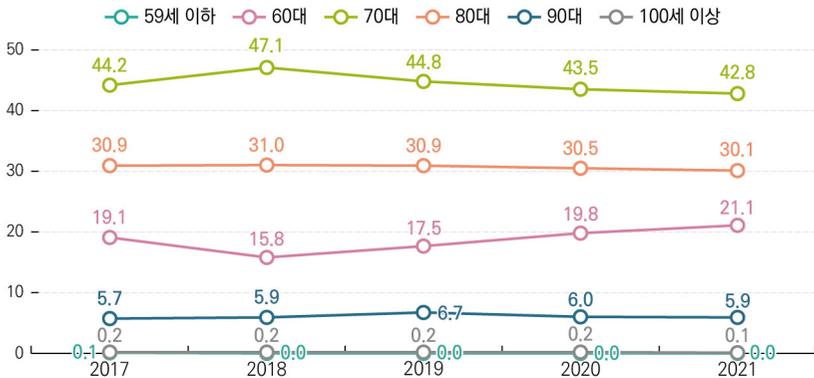


그림 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2021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50대가 2,486명(29.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0대 2,377명(28.2%), 60대 1,557명(18.5%), 40대 1,393명(16.5%), 30대 405명(4.8%)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50대 학대행위자가 52.1%(1,634명 → 2,486명)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 60대 40.3%(1,110명 → 1,557명), 70대 16.9%(2,034명 → 2,377명)의 증가율을 보임

표 17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19세	46	50	42	62	67
	0.9	0.9	0.7	0.9	0.8
20~29세	115	105	81	117	138
	2.3	1.9	1.4	1.7	1.6
30~39세	325	318	306	389	405
	6.4	5.6	5.3	5.8	4.8
40~49세	1,150	1,253	1,184	1,352	1,393
	22.5	22.1	20.5	20.2	16.5
50~59세	1,275	1,414	1,465	1,634	2,486
	25.0	25.0	25.4	24.4	29.5
60~69세	827	824	940	1,110	1,557
	16.2	14.5	16.3	16.6	18.5
70세 이상	1,363	1,701	1,759	2,034	2,377
	26.7	30.0	30.4	30.4	28.2
계	5,101	5,665	5,777	6,698	8,423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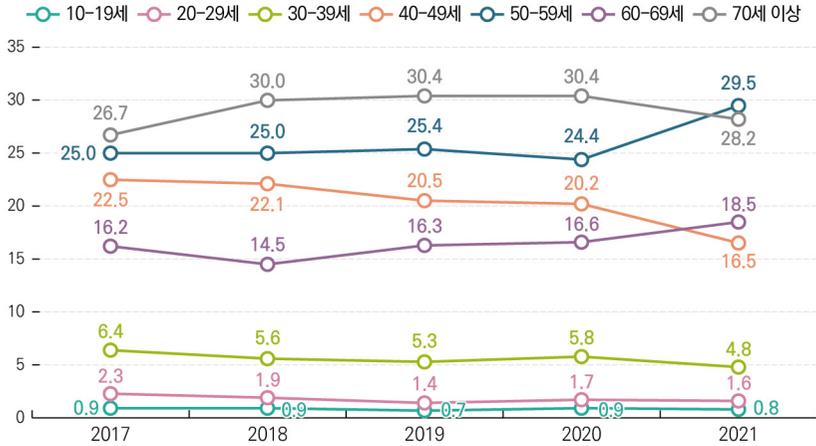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PART

04



제언  
(전문가 분석)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4

## 제언(전문가 분석)

### 노인학대 발생 원인 분석

#### 노인학대 판정 지속적인 증가

-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년대비 8.2% 증가(6,259건→6,774건) 하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내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가족 간의 갈등,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노인학대 판정건수 추이 : ('17) 4,622건 → ('18) 5,188건 → ('19) 5,243건 → ('20) 6,259건 → ('21) 6,774건
  -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지나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필요성 또한 있음
    - \*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 ('20) 939건 → ('21) 860건 (8.4% 감소)
- 이와 함께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실시('19~),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상담원 파견 사업 실시('19~),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1~),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으로 일반 국민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학대행위자(아들→배우자) 및 가구형태(자녀동거→노인부부) 순위 변화

- 코로나 19 장기화 및 가구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노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자녀동거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배우자 학대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

#### \*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변화

(20) 자녀동거 32.9% - 노인부부 32.7% - 노인독거 17.1% 등의 순

(21) 노인부부 34.4% - 자녀동거 31.2% - 노인독거 17.6% 등의 순

#### [참고] 가구형태 변화 추이\*

• 노인부부 가구 : ('08) 47.1% → ('14) 44.5% → ('20) 58.4%

• 자녀동거 가구 : ('08) 27.6% → ('14) 28.4% → ('20) 20.1%

※ 출처 : 각 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 노인학대 판정건수 증가 대비 높은 재학대 증가율

- 노인학대 증가율은 8.2%로 주춤해졌으나, 재학대 증가율은 20.4%로 ('20년 614건 → '21년 739건) 매우 높음

- 특히 재학대의 96.9%(71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정 내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학대 추이 : ('17) 359건 → ('18) 488건 → ('19) 500건 → ('20) 614건 → ('21) 739건

\*\* 사후관리 추이 : ('17) 11,759건 → ('18) 13,243건 → ('19) 18,135건 → ('20) 24,057건 → ('21) 25,170건

---

##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인 쇄 일 : 2022년 6월

발 행 일 : 2022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